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13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 박덕흠 • 이종배 • 고동진

김선교 · 강승규 · 엄태영

박성민 · 서지영 · 김정재

서천호 · 조지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교사가 학교 내에서 8세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임용 기준이 없고, 교원이 근무 중 위험 징후가 나타나도 현장에서 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강제성과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17개 시·도교육청이 질환을 가진 교원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등을 권고할 수있지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교육청은 2015년 관련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딱 한 번 열만큼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3 신설 등).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에서 "질환교원"이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 2.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 제10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교육감이 위 촉한다.
- ③ 질환교원 심의에 의학적·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회 의결로 산하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고,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위원회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 게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⑪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⑪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① 이 법에서 "질환교원"이란
	정신적 • 신체적 질환으로 장기
	적ㆍ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
	<u>다.</u>
	<u>1. 제44조제1항제1호 및 「국가</u>
	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u>교원</u>
	2.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10조의4(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서 /처 체 리 기·ㅇ\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신 설>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교육 공무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3조의3(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③ 질환교원 심의에 의학적·전 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산하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 ④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 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 다.

-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사실 조사 결과 질환교원에 해당되 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될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 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위원 회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교 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